

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변경 내역

과목명 :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
문제번호 : A형 52번, B형 52번

문 제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?

-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-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-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-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- ⑤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·군관리계획

변경사유

문제에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을 묻고 있는데, 답항 ③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[법률 제15671호, 2018. 6. 12.] 제29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출제되었으나, 동 조항은 부칙 <법률 제12974호, 2015. 1. 6.> 제3조에 의하여 2017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지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(시장·군수는 제외한다)로 보고 있음 따라서, 본 문제에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답항 하나를 정할 수 없어, 정답을 ①, ②, ③, ④, ⑤ < 모두 정답 >으로 처리함

과목명 :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

문제번호 : A형 28번, B형 28번

문 제

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?

- ①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
-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
- ③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
- ④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
- ⑤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

변경사유

문제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묻고 있는데, 답항 ③은 명백히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, 답항 ⑤는 「지방세법」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이지만, 제9항에 의하면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(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, 답항 ⑤에서 명확한 취득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, 정답을 ③, ⑤ < 복수 정답 >으로 처리함